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지 윤리규정

2007년 6월 20일 제정
2020년 4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하 학회) 회원윤리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학회지 “국토계획(Journal of the Korea Planning Association)”에 투고, 심사,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윤리준수사항 및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준수)

- (1) (학문적 객관성) “국토계획”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 (2) (학문적 독창성) “국토계획”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국토계획”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 (4) (기타 윤리준수) “국토계획”의 투고자는 이해상충 정보제공, 생명윤리, 젠더혁신정책 등 학회지 편집규정 제7조에 규정된 윤리준수사항을 준수하고, 편집위원회와 논문심사자는 동 규정 제14조 ①항 및 ②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조의 윤리준수사항과 제4조부터 제8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과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학회 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 (6) 학술담당 부회장이나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인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학술담당 부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학술담당 부회장과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7)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 4조(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조(표절)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표절 여부는 인용 없이 기술된 분량에 관계없이 판단한다.

(3)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4)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6조(동시 투고)

「국토계획」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

제 7조(중복 게재)

(1)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국토계획”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② 제①의 규정에 의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 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①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국토계획”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수정·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①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 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국토계획”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국토계획”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국토계획”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8조(재투고)

① “국토계획”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 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 9조(학회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제4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 10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제11조 1)과 2)의 다 규정에 의한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4조 내지 제8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 11조(이의제기)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0조 4)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12조(비밀보장)

-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학회 회장과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

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별 칙

제 13조(별칙)

- (1) 연구윤리위원회가 제4조, 제5조, 제7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국토계획”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국토계획” 및 학회 홈페이지 문헌검색 자료에 공고한다.
 - 나.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5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 동안 “국토계획”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 (2) 연구윤리위원회가 제6조, 제8조에 의한 동시 투고와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나. 동시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2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 동안 “국토계획”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 (3) 연구윤리위원회가 학회지 편집규정 제7조 ①항 및 ②항에 대해 위반이라고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국토계획”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국토계획” 및 학회 홈페이지 문헌검색 자료에 공고한다.
 -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2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 동안 “국토계획”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2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30.)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